

[부양가족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요건]

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?

-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**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**(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) **이하**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|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|

- **(근로소득)**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5백만원,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-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= 근로소득금액 150만원
 - 타소득 있는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333만원 -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
 - * 일용근로소득만 있는(금액 크기 관계없음)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**(사업소득)**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총수입금액 1,000만원 - 필요경비 900만원 = 사업소득금액 100만원
- **(기타소득)**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총수입금액 750만원 - 필요경비 450만원 = 기타소득금액 300만원
 - *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**(연금소득)**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(비과세소득 제외)이 연 516만원(연금소득금액 100만원) 초과하거나, 사적연금소득(연금저축·퇴직연금 등)의 총 연금액이 연 1,200만원 초과(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)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*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
- **(금융소득)** 이자·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*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**(퇴직소득)**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퇴직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100만원 = 퇴직소득금액 100만원
- **(양도소득)**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
 - 양도차익(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장기보유특별공제 = 양도소득금액 100만원
- **(연간 소득금액)** 근로·사업 등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)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